

# (사)한국건축역사학회 임원 선출 규정

제정 2017. 4. 15

개정 2017. 11. 18

## 제1장 총칙

#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건축역사학회(이하 "본회"라 칭한다)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적용 범위)

임원 선출에 관하여는 본회 정관에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정에 따른다.

### 제3조 (임원의 종류와 정수)

본회에는 정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① 회장(1인) 부회장(4인 이하)

부회장은 각각 총무, 학술, 편집위원장, 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.

② 이사 15인 이상 30인 이하(회장, 부회장 포함)

본회의 목적 사업을 전담하기 위하여 이사 중에서 총무, 학술, 재정, 사업, 교류, 홍보, 지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7 내지 9명의 이사를 상임 이사로 선임할 수 있다.

③ 감사 2인

### 제4조 (임원의 임기)

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 (정관 제17조)

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보선에 의해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## 제2장 임원의 추천 및 인준

### 제5조 (차기 회장의 추천 및 인준)

차기 회장은 현임 회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정기총회(통상적으로 11월 셋째 주 토요일 개최, 이하 같음) 20일전까지「임원선출위원회」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어 현임 회장 임기 만료 1월전까지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6조 (차기 감사의 추천 및 인준)

차기 감사 2인은 현임 감사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정기총회 20일전까지「임원선출위원회」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어 현임 회장 임기만료 1월 전까지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

### 제7조 (임원의 선임)

임원 중 부회장, 이사의 선임은 본회 정관 제13조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,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.

② 상임이사는 회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.

## 제8조 (임원의 보선)

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한다.

## 제9조 (임원의 선임제한)

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,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 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. (정관 제15조)

## 제3장 임원선출위원회

### 제10조(구성)

「임원선출위원회」는 본회 정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성 운영한다.

- ① 「임원선출위원회」는 역대 회장, 부회장 및 현임 이사(理事)와 직전(直前)이사(理事)로 구성한다.
-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「임원선출위원회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.

### 제11조 (차기 회장 후보자 선출)

차기 회장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- ① 「임원선출위원회」는 회장의 자격(제14조)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차기 회장에 입후보한 자를 대상으로 직접 비밀투표를 실시하여 1인의 차기 회장후보자를 선출한다.
- ② 차기 회장 후보자는 유효 득표수의 다 득표자로 확정한다. 다만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며, 재투표에 의해서도 당선자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. 다만,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「선거관리위원회」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.
- ③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 찬반(贊反) 투표를 실시하여 확정하며,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적임자를 추대(推戴)할 수 있다.
- ④ 임원선출위원회는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차기 회장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해 차기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과 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.

### 제12조 (차기 감사 후보자 선출)

차기 감사 후보자는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.

- ① 「임원선출위원회」에서는 감사(監事)의 자격(제14조)을 가진 정회원 중에서 이사회가 추천한 차기 감사 후보자 중에서 2인을 선출하거나 「임원선출위원회」에서 적임자를 추대할 수 있다.
- ② 차기 감사를 투표로 선출할 경우 제11조 2,3,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

### 제13조 (의결 정족수)

「임원선출위원회」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제10조 1항의 위원 중 해외여행자(체류자)와 병원에 장기 입원중인 자 또는 회의에 불참을 통보해온 자는 재적(在籍) 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 의결시 가부(可否) 동수(同數)인 경우 의장이 결정하며, 위원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.

## 제4장 임원의 자격

### 제14조 (회장, 부회장, 감사의 자격)

회장, 부회장, 감사에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7년 이상 본회 정회원으로, 본회 임원(이사, 감사)을 2회 이상 역임한 자
- ② 미납 및 체납 회비가 없는 정회원이어야 한다.

- ③ 전항(前項)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### 제15조 (이사의 자격)

본회 이사와 상임이사에 선임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- ① 5년 이상 본 학회 정회원으로 미납 및 체납 회비가 없어야 한다. 단, 가입하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원을 이사로 선임할 경우 이사회 승인이 있어야 하며, 그 수는 전체 이사 수의 1/10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② 이사를 선임할 때는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전항(前項)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라도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.

## 제5장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운동

### 제16조 (선거관리위원회)

임원선출위원회 내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, 위원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장(임원선출위원회 의장)은 정기총회 3월전까지 차기 회장과 감사의 선출을 공정하게 관리할 임시기구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.
-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부회장 2인, 상임이사 3인 및 감사 2인으로 구성하며 차기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업무 일체를 담당한다.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으로 정하며, 학회 간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간사를 겸한다.
-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기총회 60일전까지 이 규정에 의거 차기 회장과 감사 선출에 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(회장 후보자의 명단 및 선출방법, 세부 일정 등)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. 이사회에서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본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고 선거관리 업무에 착수한다.

### 제17조(후보 등록 및 선거운동)

차기회장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운동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.

- ① 차기회장 입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에 관한 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장 한다.
- ②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소정의 서식을 작성하여 신고공고일 이후 7일에서 10일 사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.
- ③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세부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, 입후보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④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할 경우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.
- ⑤ 이 밖의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### <부칙>

제1조 이 규정 공포 전에 이루어진 임원 선출은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제2조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른다.

제3조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